

의안번호	2215818
의 퇴 인	한준호의원
회 답 일	2026.7.3
추계번호	26B2840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억 4,200만원, 2032년 2,700만원 등 향후 5년간 3억 5,000만원(연평균 7,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5조)	215	—	—	—	—	215	43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등 (안 제7조)	27	27	27	27	27	135	27
합계	242	27	27	27	27	350	70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모듈러 건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모듈러 건축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기술 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 시 모듈러 건축기술의 적용 비율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안 제7조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2항)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의결사항 4. 제22조에 따른 생산인증에 관한 중요 의결사항 5. 제26조에 따른 건축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에 관한 중요 의결사항 6. 그 밖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효율적인 모듈러 건축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 산업의 현황, 시장전망 및 기술개발 추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1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 (표준화 기준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의 일관성 확보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보급할 수 있다.(제1항) 1. 모듈러 건축물의 표준평면 및 설계기준 2. 모듈러 건축공법에 필요한 공정 및 시공 등 건설기준 3. 모듈러 건축공사의 표준품셈 및 원가계산 기준 4. 모듈러 건축공사의 감리 및 품질관리 기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에 관한 별도의	재량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민간건축 사업에의 적용 확대를 위하여 기술지원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제10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10조 (모듈러 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모듈러 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항) 1. 모듈러 건축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2. 모듈러 건축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국내외 모듈러 건축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모듈러 건축 실적 및 시장 정보의 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7	안 제11조 (모듈러 건축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2조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모듈러 건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1. 기술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 2. 기술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한 산업계 협력사업 4. 그 밖에 모듈러 건축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	재량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3조 (전문인력의 양 성)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1항) 1. 교육기관 및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모듈러 건축 관련 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모듈러 건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 연계 지원사업 4. 모듈러 건축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지원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18조 (모듈러 건축 진 흥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확대와 모듈러 건축의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4항) 1. 모듈러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2. 모듈러 건축 관련 실증 및 성능검증 시설 등의 구축사업 3. 그 밖에 진흥구역 내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구역 내 모듈러 건축의 촉진을 위하여 건축주 및 모듈러 건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5항)	재량규정
11	안 제19조 (국고 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제1항) 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지원 2. 모듈러 건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의 활성화	재량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시·도지사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사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원·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듈러 건축물의 건설·취득 및 관리 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12	안 제2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모듈러 건축 관련 국제 기술 교류, 표준화 협력,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모듈러 건축기술 및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외진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제2항) 1. 모듈러 건축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2. 모듈러 건축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3. 국내 모듈러 건축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발주처와의 연계 및 수주 활동 지원 4.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및 투자 연계 5. 국제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지원, 모듈러 건축기술 관련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재량규정
13	안 제22조 (모듈러 생산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부재 등의 안정적인 생산과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또는 건축물의 전부를 생산(제작·가공·조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공장(이하 “모듈러 공장”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및 생산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하는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이하 “생산인증”이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모듈러 공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생산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25조 (모듈러 공장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장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 1. 모듈러 건축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2.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듈러 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3. 생산인증 등급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 4. 물류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 공장 건립 지원 5. 그 밖에 모듈러 공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6조 (모듈러 건축인 증)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이하 “건축인증”이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인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16	안 제29조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의 표준화된 생산을 활성화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하는 소규모 건축물(이하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고 인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 (미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해당 조문에서 검토함
2	안 제5조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	• (추계) 국토교통부 소관 유사 법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추정함 -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및 기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추계하지 않음
3	안 제7조 (모듈러 건축 심의 위원회의 설치 등)	○	• (추계) 유사 위원회 사례를 바탕으로 추정함
4	안 제8조 (실태조사)	×	• (제3호) 실태조사와 표준화 기준 마련·보급은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표준평면·설계기준·시공기준·표준품셈·감리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의 세부 내용과 추진방식이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등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9조 (표준화 기준의 마련)		
6	안 제10조 (모듈러 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제3호) 모듈러 건축지원센터 및 협의체의 설치·운영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듈러 건축지원센터 및 협의체 설치 여부, 지정기관, 인력규모, 위탁업무 범위, 협의체 구성원, 회의횟수, 지원범위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센터에 필요한 출연금 지급범위와 운영방식 등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
7	안 제11조 (모듈러 건축 협의체)		
8	안 제12조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촉진)	×	• (제3호) 연구개발, 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은 모듈러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업과제, 지원대상, 사업기간, 지원단가, 매칭비율, 교육대상 인원, 해외진출 지원범위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하위법령과 기본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에 가능한 사항으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9	안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10	안 제21조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11	안 제18조	×	• (제3호) 진흥구역 지정·지원, 국고보조 및 모듈러 공장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의 지정)		
12	안 제19조 (국고 보조 등)		
13	안 제25조 (모듈러 공장에 대 한 지원)		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진흥구역 지정 수, 기반조성사업 및 실증·성능검증 시설 구축 규모, 국고보 조 대상·보조율, 모듈러 공장 지원대상·지원기준 등이 대 통령령 또는 향후 사업계획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는 대상 물량, 단가, 보조율 및 사업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아 관 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14	안 제22조 (모듈러 생산인증)		
15	안 제26조 (모듈러 건축인증)		
16	안 제29조 (소규모 모듈러 건 축물 인정)	×	• (제3호) 제정안은 모듈러 공장을 등급별로 인증하는 생산인증 제도,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과 사전제작물 등을 평가하 여 등급을 부여하는 건축인증제도 및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제도를 두고,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기관·운영기관·인정기관의 지정 여부, 인증·인정 대 상, 인증수요, 심사기준, 사후관리 범위, 위탁업무의 범위 및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 또한 안 제37조¹⁾는 생산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및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 신청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증·인 정 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가 납부하는 수수료 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인증·인정제도의 구체적 인 운영방식, 위탁기관 지정 여부, 정부의 별도 지원 여부 및 수수료 산정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관련 추 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을 참고
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1)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생산인증의 신청
2.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비인증의 신청
3. 제26조제7항에 따른 본인증의 신청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의 신청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
 - (유사사례)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의 평균값은 2억 1,500만원 수준임
 - (추계방법) 유사사례 사업비 2억 1,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유사 기본계획 수립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요기관	사업년도	사업비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2025	121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세종특별자치시	2024	310
평균			215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추계결과)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참고하여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기본계획 수립비용	215	-	-	-	-	215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안 제7조)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확정적이므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함

- 위원수: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는 18인으로 가정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민간위원 수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유사사례인 중앙건축위원회(총 70명, 민간위원 64명, 위촉 비율 91.4%) 인원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수당지급 대상 민간위원 수는 최대 구성인원 20명의 91.4% 수준인 18인으로 가정함
- 개최일수: 연 5회로 가정
 - 개최일수는 유사사례 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연평균 5회) 최근 3년간 평균 개최일수인 5회로 가정
- 회의참석수당 단가: 민간위원 회의당 참석수당은 1인당 30만원을 적용함
 - 1인당 회의참석수당 20만원²⁾, 유인물비 등 안전검토비 10만원

[표 4] 중앙건축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수: 2022~2024년

(단위: 일)

구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2022	5	-	5
2023	2	-	2
2024	8	-	8
평균	5	-	5

자료: 국토교통부 위원회 활동내역서(2025.12. 기준)

- (추계결과) 국토교통부 내 유사 위원회 운영비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5]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위원회운영비	27	27	27	27	27	135

2) 기획재정부(2026)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기본계획 수립비용	215	-	-	-	-	215
위원회 운영비	27	27	27	27	27	135
합계	242	27	27	27	27	350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